

『선박안전법개정법률』 해설

이 은/해양수산부 안전심의관

1. 머리말

해양수산부 출범을 계기로 어선과 일반선박의 검사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97. 12. 17일 선박안전법개정법률이 법률 제5470호로 개정 공포되어 '98. 6. 18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장하던 일반선박의 검사업무를 한국어선협회를 확대개편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한편, 국제선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항만국통제를 강력히 시행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해운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행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제선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토록 하였던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개정주요골자

- 어선을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일반선박 및 어선의 선박검사에 관하여는 모두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함.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개개의 제품에 대한 해운관청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만 받게 함으로써 품질관리의 향상 및 제조자의 편의를 도모함.
- 어선의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어선협회를 확대개편하여 기술원을 설립하고, 동기관으로 하여금 정부의 일반선박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대한민국 영해안에서의 외국선박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충실히 하고, 외국정부로부터 결함이 지적된 한국선박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결과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3. 주요개정내용

- 어선을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 포함
 종전에는 선박검사에 있어서 일반선박은 선박안전법, 어선은 어선법의 적용을 받아오던 것을 선박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반선박과 어선이 모두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일원화 하였다.
- 선박시설기준의 적용제외선박을 법적용 제외선박으로 조정(제1조의2)
 어선을 선박안전법적용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종전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시설기준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던 선박을 법적용 제외선박으로 범조문을 신설하고, 일반선박의 선박검사면제대상선박과 어선의 선박검사면제대상선박이 상이하게 되어 있던 것을 법적용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통합조정 하였다.

<중 전>

- 법 :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1의2.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2.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3.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선박
- 고시(해운항만청고시 제1995-25호, '95. 5. 2)
 1. 계선중인 선박
 2. 군함 및 경찰용 선박
 3. 호수 또는 하천만을 항행하는 선

박으로서 유선및도선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업 또는 도선업에 종사하는 선박

4. 총톤수 1톤미만의 선박
5. 추진기관 및 범장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음에 계기하는 것을 제외한 선박

가. 연해구역이상을 항행하는 것
 나. 위험물 또는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기름이나 폐기물을 산적운송하는 것

다. 특수선

라. 압항부선

- 어선법시행규칙 제52조(어선의 검사면제)

1.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
2. 총톤수 2톤미만의 동력어선과 내수면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먼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개 정>

- 법 : 제1조의2(적용범위)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4.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선박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 만재홀수선 표시대상범위 확대(제3조)
현재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선박 안전홀수선기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박안전홀수선을 만재홀수선에 포함시켰다.

〈중 전〉

- 법 제3조 : 다음의 선박에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홀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
- 선박안전홀수선지정요령(고시 제 1994-414호, '94. 2. 2)
 - ※ 만재홀수선표시의무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선박중 길이 12미터이상의 여객선 및 위험물운반선은 선박안전홀수선을 표시하여야 함

〈개 정〉

- 법 제3조 : 다음의 선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홀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
 3. 길이 12미터이상 24미터미만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
 - 가. 여객선(13인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 등록된 조선소에 선박을 건조 또는 제조토록 함(제4조의2)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미등록조선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해난사고, 환경오염, 선박의 품질과 기능저하 및 등록 중·소조선업체의 생산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 선박검사후의 변경허가 대상범위 조정(제5조의2)

종전 법규정에서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또는 설비등 선박의 시설 전부를 변경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적용지침 제19조의5의 규정에서는 변경허가의 범위를 선체·기관 등 주요설비에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형선박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변경허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변경허가의 대상범위를 조정하였다.

〈중 전〉

- 법 : 제5조의2(선박검사후의 변경금지등) 제1항
 -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은 후에 선박검사의 대상이 되는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또는 설비의 형태나 구조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관할지방해운항만청장(지방해운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출장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관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예규 : 시행규칙적용지침 제19조의 5(선박의 형태·구조등의 변경허가)

-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등 구조·형태의 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1.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총톤수 또는 용도변경 기타 선박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주요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주기관 또는 축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개 정>

○ 법 : 제5조의2(선박검사후의 변경제한등) 제1항, 제3항

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를 받은 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주요시설의 형태·구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조검사의 대상설비 및 범위 확대(제6조제1항)

선박의 운항 및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설비로서 선박건조시 그 배치 및 성능등이 사전검토 및 검사되어야 하는 시설중 완료된 시점에서는 그 시공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조타·계선·양묘설

비 및 전기설비를 제조검사 대상설비에 포함시키고, 현행 어선법 제22조(제조검사)의 규정을 수용하여 특수재질선박을 제조검사대상선박에 포함시켰다.

<종 전>

○ 법 : 제6조(제조검사)제1항

- 제조검사 대상설비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 제조검사 대상선박

1. 여객선
2.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

○ 어선법 : 제22조(제조검사)제1항

- 제조검사 대상설비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조타·계선·양묘설비

- 제조검사 대상선박

1. 길이 24미터이상의 어선
2. 특수재질로 건조되는 어선 (FRP선, 알루미늄합금선, 시멘트선)

<개 정>

○ 법 : 제6조(제조검사)제1항

- 제조검사 대상설비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조타·계선·양묘설비
5. 전기설비

- 제조검사 대상선박

1. 여객선
2.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
3.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수재질로 제조되는 선박

- 우수사업장의 인정제도 개선(제6조의2)
 우수사업장에 대한 제조·정비규정의 별도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우수사업인정 신청시 일괄 신청토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사업장에서 제조·정비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제품 개개에 대한 확인절차를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대체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자체품질관리능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토록 우수사업장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종 전〉

- 법 : 제6조2(선박용물건등 우수제조사업장등의 인정)
 -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승인받아야 함(제2항)
- 우수사업장에서 제조·정비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은 해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제3항 및 제4항)

〈개 정〉

- 법 : 제6조의2(선박용물건등의 우수사업장 인정)
 - 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 승인제도 폐지(제2항 삭제)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만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그 외는 지도·감독으로 대체함

- 한국선박안전기술원 설립(제7조, 제7조의2)

정부의 선박검사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정밀한 선박검사 집행 및 국제협약기준 미달선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고 해양수산부 출범이후 일반선박의 검사는 해운관청에서, 어선의 검사는 어선협회에서 수행하던 것을 일반선박과 어선의 구분 없이 검사기관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선박검사업무는 기술원에서, 선박안전관리의 감독·통제 기능은 정부에서 철저히 수행토록 분리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양질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선의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어선협회를 확대개편하여 기술원을 설립하고, 기술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업을 행하도록 하였다.

- 선박과 그 시설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확인 업무의 대행
-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정 업무의 대행
- 선박의 감항성확보와 해상에서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
- 국제협약등 선박안전에 관한 기술 기준의 연구·분석
- 선박의 설계·건조감리등 기술수탁 업무
-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선박검사수첩교부제도 폐지
 종전 선박안전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검사에 관한 사항 기록을 위하여 선박검사수첩을 교부하여 오던 것을 선박검사증서의 뒷면을 이용하여 기록 관리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및 처리를 간소화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였다.

※ 기록사항

- 차기 검사시기
- 검사증서유효기간내의 검사집행기록
- 무선설비의 면제 등에 관한 특기사항

□ 항만국통제의 시행과 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제13조의2)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적외항선의 선박안전관리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국항만당국으로부터 항만국통제를 받은 결과 결함이 지적된 선박의 소유자는 그 조치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국적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선박의 구난 및 해체 자격제도 완화(제16조의3)

소형선박 해체시 선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해역에 무단방치되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양오염의 우려

가 없는 일부 선박에 대하여는 해체자격이 없는 자도 선박을 해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불법방치선박을 줄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였다.

□ 일부 벌금형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제24조의2)

현행 어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어선에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제도를 「선박안전법」에 수용하여 선박에 관한 행정질서벌의 형평을 조정하고, 일부 벌칙중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경감하여 과태료처분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였다.

※ 과태료 처분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을 선박에 비치 또는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명하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 허위로 결합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게 한 자
- 외국항만당국으로부터 결함이 지적된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의 적재·운송 또는 저장방법에 대한 검사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 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